

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11월 16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11월 1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7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(2009년 12월 16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」의 개정(대통령령 제20924호, 2008. 7.23. 공포·시행)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자격 기준이 개정 되어 규정에 맞추어 평생학습센터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을 개정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평생학습센터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을 개정함.(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)
 - 소장의 자격기준(직무분야 경력)
 - 석사취득 후 9년 이상 → 5년
 - 학사취득 후 12년 이상 → 7년
 - 직원의 자격기준(직무분야 경력)
 - 학사취득 후 3년 이상 → 2년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없	음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(운영요원의 자격기준) ① 소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평생교육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평생교육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
2. 평생교육과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평생교육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
3. 평생교육과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평생교육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
4.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평생교육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
5. 12년 이상 평생교육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
6.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평생교육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
7. 평생교육분야 국가자격 2급 이상을 취득한 자

②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평생교육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
2.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평생교육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
3. 5년 이상 평생교육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
4.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평생교육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

5. 평생교육분야 국가자격 3급 이상을 취득한 자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종전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.

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523호
의결 년월일	2009. 12. 23. (제157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11. 16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」의 개정(대통령령 제20924호, 2008. 7.23. 공포·시행)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 자격기준이 개정되어 규정에 맞추어 평생학습센터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을 개정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평생학습센터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을 개정함.(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)

- 소장의 자격기준(직무분야 경력)
 - 석사취득 후 9년 이상 → 5년
 - 학사취득 후 12년 이상 → 7년
- 직원의 자격기준(직무분야 경력)
 - 학사취득 후 3년 이상 → 2년

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(운영요원의 자격기준) ① 소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평생교육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평생교육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
2. 평생교육과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평생교육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
3. 평생교육과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평생교육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
4.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평생교육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
5. 12년 이상 평생교육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
6.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평생교육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
7. 평생교육분야 국가자격 2급 이상을 취득한 자

②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평생교육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
2.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평생교육분야의 경력이 있

는 자

3. 5년 이상 평생교육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
4.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평생교육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
5. 평생교육분야 국가자격 3급 이상을 취득한 자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종전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운영요원의 자격기준) 소장 및 직원이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소장: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거나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 분야에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</p>	<p>제16조(운영요원의 자격기준) ① 소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평생교육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평생교육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</p> <p>2. 평생교육과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평생교육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</p> <p>3. 평생교육과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평생교육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</p> <p>4.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평생교육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</p> <p>5. 12년 이상 평생교육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</p> <p>6.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평생교육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</p> <p>7. 평생교육분야 국가자격 2급 이상을 취득한 자</p>

현행	개정안
<p>2. 직원: 4년제 대학에서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평생교육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</p>	<p>②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평생교육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.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평생교육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. 5년 이상 평생교육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평생교육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. 평생교육분야 국가자격 3급 이상을 취득한 자